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09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금운용 개선 권고 및 조례 규칙 심사 결과에 따라
-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계정을 기금으로 관리하고, 그 외 4개 계정(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여성발전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)을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령 표기방식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나. 기금의 운용·관리 통합(안 제4조)

-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관리
-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 계정(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여성발전,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)을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통합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기금 목적 본연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조 례 안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관계부서승인 : 해당 없음
- 입법예고 : 2009. 3. 9 ~ 3. 29 실시(의견 있음)
-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 심사여부 : 심사완료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하고,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”를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8조의 3”으로 하며, “장애인복지법”을 “「장애인복지법」”으로 하고, “노인복지법”을 “「노인복지법」”으로 하며, “여성발전기본법”을 “「여성발전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” 및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”을 각각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” 및 “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, 장애인복지계정, 노인복지계정 및 여성발전계정”을 “사회복지기금계정”으로 하고, “각각 별도의 계좌로 설치·관리하되”를 “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”로 하며, “지방재정법”을 “「지방재정법」”으로 하고,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용도)”를 “(기금의 사업 용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의 용도”를 “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사업의 용도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“15%”를 “15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사업

가.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

2. 장애인복지사업

- 가.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
- 나.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
- 다.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
- 라.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
- 마.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
- 바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- 사.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

3. 노인복지사업

- 가. 효,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
- 나.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
- 다.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
- 라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
- 마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
- 바.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
- 사. 각급 노인회(군지회, 읍·면 분회, 경로당)의 지도 육성
- 아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
- 자.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여성발전사업

- 가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
- 나. 여성단체사업의 지원
- 다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
- 라.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
- 마.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0조제1항 중 “각호의” 를 “각 호의” 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인” 및 “15인” 을 각각 “1명” 및 “15명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범위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”을 “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로 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5조 제1항”을 “제5조제1항”으로 하고, “각호와”를 “각 호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2조 제2호”를 “제2조제2호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15%”를 “15퍼센트”로 하고,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”를 “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범위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.0%”를 “2.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5%”를 “5퍼센트”로 한다.

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정의 통합) 현재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, 장애인 복지계정, 노인복지계정, 여성발전계정은 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통합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용자된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 제133조,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 제44조 및 <u>동법 시행령</u> 제41조, <u>장애인복지법</u> 제9조, <u>노인복지법</u> 제4조, <u>여성발전기본법</u>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다)의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사회복지기금(이하 “기금” 이라 한다)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제133조,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 제18조의3, 「<u>장애인복지법</u>」 제9조, 「<u>노인복지법</u>」 제4조, 「<u>여성발전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수급자” 라 함은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 2. “차상위계층” 이라 함은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</u> 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 3. “자활공동체” 라 함은 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. 4.(생략) 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----- --. 2.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</u>」----- -----. 3.----- 「<u>국민기초생활보장법</u>」----- -----. 4.(현행과 같음)
<p>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①군수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, <u>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</u>, <u>장애인복지계정</u>, <u>노인복지계정</u>, <u>여성발전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·관리하되</u>,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.</p> <p><u>다만,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①----- ----- -----, <u>사회복지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, 각각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하되</u>, ----- ----- -----.</p> <p><삭 제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기금의 용도)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 (생 략) 3.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(당해년도 기금 지출의 15% 이하) 4. (생 략) <p>②저소득주민주녀장학금계정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<p>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2.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3.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4.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5.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6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.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<p>④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효,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.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.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6.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7. 각급 노인회(군지회, 읍·면 분회, 경로당)의 지도 육성 	<p>제5조(기금의 사업 용도) ①기초생활보장 기금계정사업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~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15퍼센트 이하) 4. (현행과 같음) <p>②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저소득주민주녀장학금사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2. 장애인복지사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등록된 장애인 단체 육성 나. 장애인 건강증진 및 취미활동 지원 다. 평창군 장애인회보 발간 라. 장애인 취업상담 및 알선공동작업장 운영 마.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교실 운영 바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사.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3. 노인복지사업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효,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나.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다.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라.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마.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바.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사. 각급 노인회(군지회, 읍·면 분회, 경로당)의 지도 육성

현행	개정안
<p>8.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</p> <p>9.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⑤여성발전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</p> <p>2. 여성단체사업의 지원</p> <p>3.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</p> <p>4.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</p> <p>5.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10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1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4조(수당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5조(기금의 보조)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<u>아.</u>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</p> <p><u>자.</u> 기타 군수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4. 여성발전사업</p> <p><u>가.</u>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</p> <p><u>나.</u> 여성단체사업의 지원</p> <p><u>다.</u>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</p> <p><u>라.</u>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및 홍보</p> <p><u>마.</u>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제10조(기능)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구성) ①----- ----- 1명----- 15명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 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수당등) ----- ----- 범위에서 ----- ----- -----</p> <p>제15조(기금의 보조) ----- -----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6조(지원대상) 제5조 제1항에 의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·기관·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</p> <p>2. ~ 4. (생략)</p>	<p>제16조(지원대상) 제5조제1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법 제2조제2호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7조(이차보전) ① (생략)</p> <p>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하며, 이차보전율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대어 받은 자금 금리의 15% 범위내에서 보전한다.</p>	<p>제17조(이차보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5퍼센트 범위에서 -----.</p>
<p>제18조(지원방법 등)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, 방법에 대하여는 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.</p>	<p>제18조(지원방법 등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평창군보조금관리조례」 -----</p> <p>-----.</p>
<p>제19조(자금대여 및 상환) ①제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공동체당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,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,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대여금 상환은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에 대부이율은 연 2.0%이하이며,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연 1회 상환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.</p>	<p>제19조(자금대여 및 상환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범위에서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/p> <p>----- 2.0퍼센트-----,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④ (생략)</p> <p>⑤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<u>5%</u>의 연체이자를 적용하며, 대여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23조(기금의 회수등) 군수는 다음 <u>각호</u>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 <u>5퍼센트</u>의 연체이자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3조(기금의 회수등) ----- <u>각호</u>의 어느 하나에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 련 법 령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- 제18조의3 (자활기금의 적립)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.
-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·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」

- 제26조의2 (자활기금의 설치 <개정 2007.6.28>)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에 설치할 수 있다.
- ②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